

《禮記》의 《五經》 편입과 그 의의

李世東*

<目次>

I. 문제의 제기	1. 《五經》 편입의 과정
II. 《禮》의 자료 및 전승과 관련한 문제들	2. 《五經》 편입의 이유와 그 의의
III. 《禮記》의 《五經》 편입	IV. 결론

I. 문제의 제기

일반적으로 《詩經》·《書經》·《周易》·《春秋》·《禮記》를 《五經》이라고 한다. 여기서 앞의 세 가지는 현존하는 텍스트가 동일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춘추》의 경우도 《左傳》·《公羊傳》·《穀梁傳》의 이른바 《春秋三傳》의 해설 내용이 다르지만 근거로 삼고 있는 《春秋經》은 동일한 텍스트로 간주되기¹⁾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그러나 《예기》는 문제가 다르다. 漢代에 이미 禮와 관련된 《儀禮》·《周禮》·《小戴禮記》·《大戴禮記》 등 4종의 문헌이 있었다. 이 가운데 앞의 3종을

* 경북대학교 인문대학 중어중문학과 교수

1) 물론 《三傳》이 인용하고 있는 원문의 기사와 문자가 다소 차이가 있고, 경문이 끝나는 시기도 《공양전》과 《곡량전》은 哀公 14년에서, 《좌전》은 애공 16년에서 끝나는 등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동일한 텍스트로 간주되고 있다. 단, 청대의 금문경학자인 劉逢祿처럼 《좌전》의 원명을 《左氏春秋》라고 하며 《呂氏春秋》처럼 《春秋經》과 다른 별도의 문헌으로 보는 경우도 있었다.

《三禮》라고 하며, 오늘날 이야기하는 《예기》는 《삼례》 가운데 《小戴禮記》를 말한다. 《小戴禮記》·《大戴禮記》의 ‘禮記’라는 말은 ‘禮經’에 대한 ‘傳注’라는 의미가 강하다. 근본적으로 ‘經’으로 간주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오히려 고문경학자들은 대체로 《주례》를 經으로 간주하였고, 금문경학자들은 《의례》를 경으로 간주하였는데, 오늘날은 왜 네 가지 예서 가운데 유독 《예기》만 《오경》에 편입된 것일까?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예기》가 《오경》에 편입된 과정을 추적하고 그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禮》의 자료 및 전승과 관련한 문제들

班固는 《漢書·藝文志·六藝略》에서 禮와 관련된 經傳과 관련하여 “《禮古經》五十六卷, 《經》十七篇²⁾, 《記》百三十一篇, …… 《周官經》六篇, 《周官傳》四篇”을 기록하고 있다. 여기서 ‘예고경’은 古文 《禮經》을, ‘경’은 당대에 통용되던 今文 《禮經》을, ‘기’는 경이 아닌 禮에 대한 해설서를 말한다. ‘주관경’은 《周禮》를 말하고 ‘주관전’은 《주례》에 대한 해설서를 말한다.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예기》나 《의례》라는 명칭은 이때까지 없었던 것이다. 이제 이들에 대해 검토해 보기로 하자.

《禮古經》과 관련하여 반고는 <예문지·육예략>에서, “《禮古經》은 魯나라 淹中과 孔氏壁에서 나왔는데, 17편의 글과 비슷하지만 39편이 많다.”³⁾라고 하였고, 劉歆은 <移讓太常博士書>에서, “魯恭王이 공자의 옛 집을 허물고 궁실을 짓고자 하였는데, 허물어진 벽 속에서 고문을 얻었으니 《逸禮》 39편과 《書》 16편이었다.”⁴⁾라고 하였다. 여기서 17편은 다음

- 2) ‘十七篇’: 원문은 ‘七十篇’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북송의 학자 劉敞이 ‘七十’을 ‘十七’의 도치로 보고 朱熹가 인정하여 통설이 되었다.
- 3) <藝文志>의 원문은 “禮古經者, 出於魯淹中及孔氏, 學七十篇文相似, 多三十九篇.”인데, 여기서 ‘學七十篇’ 역시 劉敞의 견해에 따라 ‘與十七篇’의 오류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단락에서 다시 논급될 것이지만 현존하는 《儀禮》 17편을 말한다는 것이 통설이고, 39편은 고문 《禮經》 56편 가운데 기존의 금문 《예경》 17편, 즉 《儀禮》와 중복되는 부분을 제외한 편수이다. <예문지>와 <이양태상 박사서>가 공통으로 전하고 있는 정보를 종합하면, 孔壁에서 금문 《예경》 17편을 포함한 《예경》 56편이 나왔는데, 금문과 합치되는 내용을 제외한 39편을 반고는 《예고경》이라고 하였고, 유흠은 《일례》라고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일례》는 王莽 집정기인 平帝 때 잠시 學官에 세워졌으나⁵⁾ 동한에 들어와서는 더 이상 학관에 서지 않았다. 그러나 동한 말 鄭玄이 《三禮注》에서 《일례》의 편목을 인용하고⁶⁾ 있는 것으로 보아 동한 시기에 아직 사본이 민간에서 유통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위진 연간에 《일례》가 사라진 것으로 짐작되고 있다. 《일례》의 진위여부와 관련하여, 고문경학자들은 대체로 《일례》의 출현을 신뢰하였으나 금문경학자들은 유흠의 위작으로 간주하여 출현 자체를 부정하였다.

반고가 “《經》 17편”이라고 한 今文經은 한대에 《禮》·《禮經》, 혹은 《土禮》라고 불렸다. 《禮》, 혹은 《禮經》이라고 불린 것은 예와 관련된 문헌들 가운데 대표성을 띠고 있는 책이었음을 의미하며, 《土禮》라고 불린 것은 <土冠禮>·<土昏禮> 등 ‘土’의 禮들을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기 때문이다. 고문경학자들은 이 ‘17편’을 《일례》의 殘篇들이라고 생각하였고, 금문경학자들은 ‘17편’ 자체가 이미 완벽한 경전이라고 생각하였다.⁷⁾ ‘17편’은 漢代에는 아직 《儀禮》라는 명칭이 없었던 듯하다. 대체로 晉代 이후 鄭현의 《三禮注》가 성행하면서 49편의 《禮記》와 구분되

4) 《漢書·劉歆傳》：“魯恭王壞孔子宅，欲以為宮，而得古文於壞壁之中，《逸禮》有三十九，《書》十六篇。”

5) 《漢書·儒林傳·贊》：“平帝時，又立《左氏春秋》·《毛詩》·《逸禮》·《古文尚書》。”

6) 鄭현이 인용하고 있는 《일례》의 편목은 <天子巡狩禮>·<王居明堂禮>·<朝貢禮>·<軍禮>·<禘于大廟禮>·<烝嘗禮>·<中霱禮> 등이다.

7) 17편에 殘缺이 없다고 본 대표적인 문헌은 邵懿辰의 《禮經通論》이다.

면서 《의례》라는 명칭이 생겨났을 것이다.⁸⁾

사마천이 “여러 학자들이 禮를 많이 이야기하지만 노나라의 高堂生이 가장 훌륭하다. 禮는 공자의 시대로부터 비롯하였으나 아직 그 經이 갖추어지지 않았다. 진나라의 분서 이후 글이 더욱 흩어지고 사라졌는데 지금은 오직 《土禮》만이 남아 있으며 고당생이 제대로 이야기하고 있다.”⁹⁾라고 한 것을 보면 《의례》는 漢初에 남아 있던 유일한 禮書였다. 《한서·유림전》¹⁰⁾에 의하면 고당생 이후 蕭奮이 예학을 전하여 孟卿으로 이어지고 맹경의 제자 后蒼은 《后氏曲臺記》라는 예설을 남겼다. 이 후창의 문하에서 숙질간이었던 戴德·戴聖 및 慶普가 나와서 예학에 大戴·小戴·慶氏 등 三家의 學이 있게 되었다.

《의례》의 傳本은 한대에 戴德本과 戴聖本 및 劉向의 《別錄》本 등 3종이 있었는데 편차만 달랐을 뿐 내용은 대체로 동일하였으며,¹¹⁾ 《한서·유림전》에서 언급한 慶普의 전본은 전하지 않았다. 1959년 甘肅省 武威縣 漢墓에서 약간의 다른 자료와 함께 《儀禮》簡 469매가 출토되었는데 이른바 武威漢簡이다. 서한 말기의 것으로 판정된 이 《儀禮》簡은 기존의 3본과 편차가 다른 바, 후창이나 경보의 전본이라는 견해들이 제기되었으나 오늘날 연구자들은 대체로 경보의 전본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상으

- 8) 皮錫瑞, 《經學通論·三禮》(中華書局 復刊, 1998), 1쪽: “漢所謂禮, 卽今十七篇之《儀禮》, 而漢不名《儀禮》, 專主經言, 則曰《禮經》. 合記而言, 則曰《禮記》. 許慎·盧植所稱《禮記》, 皆卽《儀禮》與篇中之記, 非今四十九篇之《禮記》也. …… 蓋以鄭君並注三書, 後世盛行鄭注, 於是三書有三禮之名, 非漢初之所有也.”
- 9) 《史記·儒林傳》: “諸學者多言禮, 而魯高堂生最本. 禮固自孔子時, 而其經不具, 及至秦焚書, 書散亡益多, 於今獨有《土禮》, 高堂生能言之.”
- 10) 《漢書·儒林傳》: “孟卿東海人也. 事蕭奮, 以授后倉·魯閭丘卿. 倉說禮數萬言, 號曰《后氏曲臺記》, 授沛閭人 通漢子方·梁戴德延君·戴聖次君·沛慶普孝公. …… 由是禮有大戴·小戴·慶氏之學.”
- 11) 《四庫全書總目·儀禮注疏》: “《儀禮》出殘闕之餘, 漢代所傳凡有三本: 一曰戴德本, …… 一曰戴聖本, …… 一曰劉向《別錄》本, 卽鄭氏所注, 賈公彥疏.” 이 글의 생략된 부분은 각 전본들의 篇次인데 원래 《儀禮注疏》의 賈公彥 疏에서 인용하고 있는 鄭玄의 《三禮目錄》을 재구성한 것이다.

로 보면 현대의 《의례》 전본은 4종인 셈인데 유향의 《별록》본을 채택한 鄭玄의注가 성행하면서 현재의 표준 전본이 되었다.

《의례》는 漢初의 유일한 禮書이며 한무제 이후 五經博士가 설치되면서 禮의 二戴博士는 당연히 《儀禮》를 두고 이루어진 대덕과 대성의 학설에 따른 博士일 뿐¹²⁾, 《예기》라는 이름조차 없었다. 그러므로 孔穎達이 《五經正義》를 편찬하면서 《예기》를 《오경》에 편입한 뒤에도 朱熹는 《예기》를 ‘義疏’로, 《의례》를 ‘本經’으로 간주하여 《儀禮經傳通解》를 저술하기까지 하였던 것이다.¹³⁾ 《의례》는 冠·婚·喪祭·朝聘·鄉射 등 각종 예제의 구체적 절차를 밝히고 있는 실용 예서이다. 그러므로 이후 유가의 의례들은 대체로 이를 기본으로 하여 가감보완한 것들인 바, 후대에 큰 영향력을 발휘한 책이라고 할 수 있다.

《周禮》는 《周官》이라고도 한다. 《史記·封禪書》에 《周官》이 서명으로 출현하고 있으나 사마천이 <유림전>에서 “지금은 오직 《土禮》만이 남아 있으며”라고 한 것을 보면 사마천 당시의 《주관》은 후일의 《주례》와 문자의 출입이 심하거나, 혹 동일한 것이라 하더라도 사마천은 《주관》을 예서로 간주하지 않은 것이다.¹⁴⁾ 그러나 班固가 《漢書·藝文

12) 皮錫瑞, 앞의 책, 8쪽, <論漢立二戴博士以《儀禮》非《禮記》後世說者多誤毛奇齡始辨正之> 참조.

13) 《朱子全書·儀禮經傳通解·乞修三禮筭子》(上海古籍出版社 復판, 2002), 제2책 25쪽: “《周官》一書, 固爲禮之綱領, 至其儀法度數, 則《儀禮》乃其本經, 而《禮記》<郊特牲>·<冠義>等篇, 乃其義疏耳. …… 熙寧以來, 王安石變亂舊制, 廢罷《儀禮》, 而獨存《禮記》之科, 棄經任傳, 遺本宗末, 其失已甚.” 주희는 이筭子を 결국 올리지 못하였고, 《儀禮經傳通解》 역시 미완인 채로 죽었으나 그 뒤 그의 제자 黃幹과 楊復이 완성하였다.

14) 《史記·封禪書》: “《周官》曰, 冬日至, 祀天於南郊, 迎長日之至; 夏日至, 祭地祇. 皆用樂舞, 而神乃可得而禮也. …… 自得寶鼎, 上與公卿諸生議封禪. 封禪用希曠絕, 莫知其儀禮, 而群儒采封禪《尚書》·《周官》·《王制》之望祀射牛事.” 여기서 사마천이 인용한 《周官》의 문구는 현존하는 《尚書·周官》이나 《周禮》에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周禮·春官·宗伯·大司樂》에 동지와 하지에 천신과 지신에게 樂舞를 바치는 내용이 있으나 동일한 내용으로 보기는 어려울 만큼 문자의 출입이 심하다.

志·六藝略》의 禮類에 ‘《周官經》 六篇’을 기록하였으니 동한에 와서 이미 《주례》는 ‘禮經’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皮錫瑞는 《주관》이 《주례》로 불리게 된 것이 劉歆으로부터 비롯한다고 하였는데¹⁵⁾ 대체로 서한 말부터 《주관》은 예서로 인식되면서 《주례》라는 명칭이 함께 사용된 듯하다. 《주관》과 《주례》의 명칭을 두고 당의 賈公彥은 《周禮疏》에서, “관직의 설치를 두고 말하면 《주관》이라고 하고, 제도를 두고 말하면 《주례》라고 한다.”고 하였으나 周子同에 의하여 부정된 바 있다.¹⁶⁾

아울러 주여동은 《주례》의 내원과 관련하여 여러 기록들의 설을 다섯 가지로 정리하였는데, 1. 한무제 때 나타났으나 궁중에 비장하였다는 설(《後漢書·馬融傳》), 2. 河間獻王이 처음 구하였다는 설(《한서·하간현왕전》), 3. 하간현왕 때 李氏가 처음 바쳤다는 설(陸德明 《經典釋文》), 4. 《고문상서》와 함께 孔壁에서 발견되었다는 설(鄭玄 《六藝論》), 5. 《逸禮》와 함께 孔安國이 진상하였다는 설(《후한서·儒林傳》) 등¹⁷⁾이다. 그러나 이상 5종 견해의 근거가 되는 기록들이 모두 劉歆 이후의 것들이고, 유희이 《주례》를 처음 學官에 세웠기¹⁸⁾ 때문에 청대의 금문경학자들은 유희이 위작하였다는 견해까지 제기하였다.¹⁹⁾ 어쨌든 《주례》는 이밖에도 작자와 저작시기 등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경학사에서 논쟁이 끊이지 않았던 책이었다. 주지하다시피 《주례》는 天子의 六官과 그 예하 직관의 기능과 직무까지 상세히 밝히고 있어, 후대 六部 관제의 표준이 된 책이다.

15) 皮錫瑞, 앞의 책, 49쪽: “《周官》改稱《周禮》, 蓋卽始於劉歆. 荀悅《漢紀》曰: ‘劉歆奏請, 《周官》六篇, 列之於經爲《周禮》.’ 陸德明《(經典釋文)序錄》曰: ‘劉歆始建立《周官經》以爲《周禮》.’ 是其明證.”

16) 朱維鈺 編, 《周子同經學史論著選集》(上海人民出版社, 1996), 240쪽: “賈公彥《周禮義疏》加以解釋, 以爲‘以設位言之, 謂之《周官》; 以制作言之, 謂之《周禮》.’ 其說亦未可盡信.”

17) 같은 책, 240-241쪽.

18) 《漢書·藝文志·六藝略》: “王莽時劉歆置博士.”(‘周官經 六篇’ 아래의 自註)

19) 皮錫瑞, 앞의 책, 49-51쪽, <論《周官》當從何休之說出於六國時人非必出於周公亦非劉歆僞作> 참조.

班固는 《漢書·藝文志》에서, 《經》十七篇과 《周官經》六篇 이외에 ‘《記》百三十一篇’을 저록하고 ‘七十子後學者所記也’라고 自註하였다. 공문 제자의 후학들이 禮에 대하여 해설한 저술이 131편이 있다는 말이다. 孔穎達은 <禮記正義解題>에서, “(鄭玄의) 《六藝論》에 이르기를 ‘오늘날 세간에 유행하는 예는 대덕과 대성의 예학이다.’라고 하였고, 또 이르기를 ‘대덕은 《記》 85편을 전하였다.’ 하였으니 《大戴禮》가 그것이요, ‘대성은 《記》 49편을 전하였다.’ 하였으니 바로 이 《禮記》가 그것이다.”²⁰⁾ 라고 하였다. 정현의 《육예론》은 전하지 않지만 《大戴禮記》와 《禮記》(《小戴禮記》)의 편수를 언급한 최초의 문헌이다.

반고와 정현의 기록을 종합해보면 반고가 언급한 《記》 131편이 《大戴禮記》와 《小戴禮記》의 合數일 가능성이 큰데, 3편이 차이가 나는 것과 관련하여 청대의 錢大昕은 《二十二史考異·漢書考異》에서 《소대례기》는 <曲禮>·<檀弓>·<雜記>편을 각각 상하로 나누어 실제로는 46편이기에 《대대례기》와의 합수가 131편이라고 하였다.²¹⁾ 《隋書·經籍志》에는 기존의 예설 214편을 대덕이 85편으로 산삭 기록하여 《大戴記》라 하였고 대성이 다시 《대대기》를 46편으로 산삭하여 《小戴記》라 하였는데, 한말에 馬融이 3편을 더하여 49편이 되었다²²⁾고 하였다. 이밖에도 戴聖이 아니라 叔孫通이 《예기》를 처음 편찬하였다는 피석서의 설²³⁾ 등

20) <禮記正義解題> : “《六藝論》云: ‘今禮行于世者, 戴德·戴聖之學也.’ 又云: ‘戴德傳《記》八十五篇, 則《大戴禮》是也; ‘戴聖傳《記》四十九篇, 則此《禮記》是也.’ 孔穎達의 《禮記正義》에는 <禮記正義序>가 있고 또 <禮記正義>라고 제목을 붙인 해제 성격의 글이 있다. 위의 인용문은 이 해제 성격의 글에 실려 있는데 편의상 이 글을 ‘<禮記正義解題>’로 칭하기로 한다.

21) 朱維鈺 編, 앞의 책, 247쪽 참조.

22) 《隋書·經籍志》: “凡五種, 合二百十四篇. 戴德刪其煩重, 合而記之, 為八十五篇, 謂之《大戴記》. 而戴聖又刪大戴之書, 為四十六篇, 謂之《小戴記》. 漢末馬融, 遂傳小戴之學, 融又定<月令>一篇·<明堂位>一篇·<樂記>一篇, 合四十九篇. 而鄭玄受業於融, 又爲之注.”

23) 皮錫瑞, 앞의 책, 64-65쪽, <論禮記始撰於叔孫通> 참조. 이밖에도 현대의 역사학자 洪業은 《禮記引得》(上海古籍出版社, 1983)의 서문에서, 《대대례기》와 《소대례기》가 한 시대 한 사람의 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大小戴로

《예기》의 내원과 관련하여 상호 모순되는 설들이 개진되었으나 대부분의 견해들이 근거를 알 수 없는 억측에 불과하여 진위를 판단하기 어렵다.

현존하는 《大戴禮記》와 《禮記》를 비교해볼 때 내용상의 차이는 있지만 제목이 같은 편들이 있고 내용도 유사한 부분이 있어 대성이 대덕의 책을 다시 산삭하여 《소대례기》, 즉 《예기》를 편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내용상으로 보더라도 《의례》는 실용 예서이고 《주례》는 官制만을 다루고 있는 것에 비하여 《예기》에는 禮의 이론과 실재를 포괄하고 있다. 朱熹의 지적처럼 《의례》를 해설한 부분도 있고²⁴⁾ 학문과 정치·문화 등 다방면에 걸친 여러 가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더러는 작자가 알려진 글도 있어²⁵⁾ 아마 선진으로부터 한초까지 전해오던 잡다한 예설들을 대덕과 대성이 별도로 편집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鄭玄은 금고문을 집대성한 한대 최고의 경학자인데 특히 예학에 조예가 깊었다. 그는 앞에서 살펴본 4종의 예서 가운데 유독 《대대례기》를 제외하고 《의례》·《주례》·《예기》 등 3종에만 주를 달았다. 이후 남북조를 거쳐 당대까지 ‘鄭學’이 유행하면서 《대대례기》는 점차 읽히지 않게 되었고 唐代에 이르러 이미 39편으로 줄어들어 현존하고 있다.

이제 이상에서 간략하게 살펴본 4종 예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예기》의 《오경》 편입과정을 추적해 보기로 한다.

부터 정현에 이르는 200여 년간 자료가 모여 동한 중엽에 만들어졌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24) 《朱子語類·卷87·禮4·小戴禮》(中華書局 校刊, 2004), 2225-2226쪽: “問讀《禮記》. 曰: ‘《禮記》要兼《儀禮》讀, 如冠禮·喪禮·鄉飲酒禮之類, 《儀禮》皆載其事, 《禮記》只發明其理. 讀《禮記》而不讀《儀禮》, 許多理皆無安著處. …… 《禮記》只是解《儀禮》, 如《喪服小記》便是解《喪服傳》, 惟《大傳》是總解.”

25) <禮記正義解題>: “<中庸>是子思伋所作, <緇衣>公孫尼子所撰. 鄭康成云: ‘<月令>呂不韋所修. 盧植云: <王制>爲漢文時博士所錄.”

Ⅲ. 《禮記》의 《五經》 편입

1. 《五經》 편입의 과정

대체로 戴聖이 기존의 예설들을 취집하여 편찬한 것으로 간주되는 《예기》는 《한서》에는 전혀 기록이 없다. 반고가 《한서》를 편찬할 당시까지 《예기》라는 명칭이 없었던 것이다. 《後漢書》에는 더러 그 명칭이 보이는데, <橋玄傳>에 그의 7대조 橋仁이 《禮記章句》 49편을 저술하였다²⁶⁾고 하였다. 교인은 《한서·유림전》에 楊榮과 함께 대성의 제자라고 하였으니,²⁷⁾ 교인은 대성의 《의례》학을 계승하면서 동시에 그의 《예기》학을 전수하였던 것이다. <曹褒傳>에는 조포가 慶氏《禮》를 익혀 박사가 되었던 그의 부친 曹充의 예학을 계승하고 또 《예기》 49편을 전하였다²⁸⁾는 기록이 있다. 동한 章帝 때 인물인 조포는 慶普의 《의례》학과 함께 대성의 《예기》학에 조예가 깊었던 것이다. 그러나 교인이나 조포 당시에는 《예기》라는 명칭이 없었으며, 《후한서》를 집필한 范曄이 살았던 劉宋 당시에 통용되던 명칭을 빌어 《예기》라고 하였을 것이다. 어쨌든 《후한서》의 이 두 기록을 신뢰한다면, 戴聖 당시에 그의 49편 예서가 완성되었고 그의 제자가 이미 章句류의 해설서를 집필하였으며, 동한 초기까지 그 전통이 면면히 이어져 오고 있었다.

그러나 戴德의 《대대례기》와 관련하여서는 이에 상응하는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한서·유림전》에 대덕의 《의례》학이 徐良에게 전하여졌

26) 《後漢書·橋玄傳》：“橋玄字公祖，梁國睢陽人也。七世祖仁，從同郡戴德學，著《禮記章句》四十九篇，號曰橋君學。”

27) 《漢書·儒林傳》：“小戴授梁人橋仁季卿·楊榮子孫。仁為大鴻臚，家世傳業，榮琅邪太守。”

28) 《後漢書·曹褒傳》：“曹褒字叔通，魯國薛人也。父充，持《慶氏禮》，建武中為博士。……褒博物識古，為儒者宗。十四年，卒官。作《通義》十二篇，《演經雜論》百二十篇。又傳《禮記》四十九篇，教授諸生千餘人，慶氏學遂行於世。”

음을 이야기하는 기록²⁹⁾이 있을 뿐, 현대에서는 《대대례기》에 대한 해설서는 물론이고 徐良 이후의 전수와 관련한 기록도 찾아보기 힘들다. 다만 북조의 北周에 와서 盧辯이 처음으로 《대대례기》의 주해서를 내었을 뿐이다.³⁰⁾ 이는 《대대례기》와 《소대례기》의 완성 이후 시간의 경과에 따라 학자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형성된 우열관의 반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唐初의 陸德明은 “陳邵의 <周禮論序>에 이르기를, ‘…… 후한의 馬融과 盧植이 제가의 동이를 상고하여 戴聖의 저술에 첨부하고 중복되는 부분과 서술이 소홀한 부분을 산삭한 것이 세간에 퍼졌는데 바로 오늘날의 《예기》가 이것이다.”³¹⁾라고 하였다. 晉 武帝 泰始(265-274) 연간에 죽은³²⁾ 진소는 마옹·노식과 시간적 차이가 대략 100여 년에 불과한 인물이므로 비교적 믿을만한 기록일 것이다. 동한의 經學大師들인 마옹과 노식도 이처럼 《예기》를 깊이 연구하고 주석서를 집필하였으나 이들이 《대대례기》를 익혔다는 기록은 없다. 《예기》가 높이 평가받았음은 北魏의 학자 李謐이 明堂의 제도를 논하면서 말한 다음의 언급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소대씨가 전한 禮事와 관련한 기록 49편을 《禮記》라고 이름하는데, 비록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제설들을) 절충을 잘한 부분이 많으니 전현들의 글과 비교하여도 부끄러움이 없다.³³⁾

29) 《漢書·儒林傳》：“大戴授琅邪徐良旂卿，爲博士·州牧·郡守，家世傳業。”

30) 《周書·盧辯傳》：“辯少好學，博通經籍，舉秀才，爲太學博士。以《大戴禮》未有解詁，辯乃注之。”

31) 《經典釋文·序錄》：“陳邵<周禮論序>云：‘…… 後漢馬融·盧植考諸家同異，附戴聖篇章，去其繁重及所敘略，而行於世，卽今之《禮記》是也。”

32) 《晉書·儒林傳·陳邵》：“泰始中，詔曰：‘燕王師陳邵清貞潔靜，行著邦族，篤志好古，博通六籍，耽悅典誥，老而不倦，宜在左右以篤儒教。可爲給事中。’卒於官。”

33) 《魏書·逸士傳·李謐》：“小戴氏傳禮事四十九篇，號曰《禮記》，雖未能全當，然多得其衷，方之前賢，亦無愧矣。”

이처럼 이미 사인들 사이에서 높이 평가받아오던 《예기》가 위상이 더욱 급격히 높아진 것은 정현의 《禮記注》가 나오고부터이다. 張恭祖에게 《예기》를 배웠던 정현은 노식의 소개로 마옹의 문하에 들어가게 되고,³⁴⁾ 노식과 함께 《예기》에 조예가 깊었던 마옹은 정현에게 영향을 주었다. 정현은 노식과 마옹의 주석서에 근거하여 《禮記注》를 집필하였고,³⁵⁾ 《儀禮注》와 《周禮注》도 저술하였다. 기존의 4종 예서 가운데 《대대례기》를 제외한 3종의 예서에 주석을 가한 것이다. 혹 정현은 《隋書·經籍志》의 언급³⁶⁾처럼 《소대례기》가 《대대례기》를 간추린 簡明本이라고 생각하여 이 책만 주해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이로부터 《삼례》의 명칭이 생기게 되었다. ‘記’에 불과했던 《소대례기》가 금문경인 《의례》 및 고문경인 《주례》와 함께 ‘經’의 반열에 오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때부터 《소대례기》는 동급이었던 《대대례기》를 소외시키고 《예기》라는 이름을 독점하였고, 《대대례기》는 읽히지 않는 책이 되었다.

東晉의 元帝는 등극 초기에 博士員을 감원하면서 《주례》와 《예기》의 박사는 존치되 《의례》의 박사는 없애버렸다.³⁷⁾ 그 뒤 이를 다시 회복시키지만³⁸⁾ 이미 《대대례기》를 소외시켰던 《예기》의 위상이 이 시기에 와서는 《의례》의 위상조차 능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남북조에 이르러 경학에 南學과 北學의 구분이 생기면서 남북이 각각 존중하던 경전과 주해가 달랐으나, 《삼례》는 남북 공히 정현의 주와 함께 존중

34) 《後漢書·鄭玄傳》：“又從東東張恭祖受《禮記》·《左氏春秋》·《古文尚書》。以山東無足問者，乃入西關。因涿郡盧植，事扶風馬融。”

35) 《經典釋文·序錄》：“鄭玄亦依盧·馬之本，而注焉。”

36) 전주 22) 참조.

37) 《晉書·荀崧傳》：“元帝踐阼……時方修學校，簡省博士。置《周易》王氏·《尚書》鄭氏·《古文尚書》孔氏·《毛詩》鄭氏·《周官》·《禮記》鄭氏·《春秋左傳》杜氏·服氏·《論語》·《孝經》鄭氏博士各一人，凡九人。其《儀禮》·《公羊》·《穀梁》及鄭《易》皆省不置。”

38) 《晉書·職官志》：“及江左初，減爲九人。元帝末，增《儀禮》·《春秋公羊》博士各一人，合爲十一人。”

되었다.

남북조와 隋의 亂政을 극복하고 새롭게 등장한 통일 왕조 唐은 貞觀之治와 開元盛世를 통하여 공진의 번영을 구가하였다. 당은 사상과 종교에 대하여 너그러웠던 왕조이지만 漢과 마찬가지로 유학을 통치이념으로 채택하였기 때문에 남북 학술의 분기를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 특히 堯舜之道와 周孔之教를 천명한³⁹⁾ 태종은 경학의 통일 작업을 추진하였다. 태종의 경학 통일 작업은 표준경전의 확정과 표준주해의 완성으로 구체화된다. 《新·舊唐書》와 《貞觀政要》가 모두 이 사실을 다루고 있는데 이 자료들을 비교 검토해보면 윤곽을 살펴 볼 수 있다. 우선 《정관정요》의 기록을 보기로 한다.

정관 4년에 태종은 經籍이 성인으로부터 멀어진 지가 오래되어 문자가 어긋났기에 前 中書侍郎 顏師古에게 명하여 秘書省에서 《오경》을 考定하게 하였다. 작업이 끝난 뒤, 다시 尙書左僕射 房玄齡으로 하여금 諸儒들을 모아 거듭 정밀하게 토론하도록 하였다. 당시의 제유들은 스승의 견해를 전하여 익히기만 해 그릇된 지가 오래되어 함께 (안사고를) 비난하며 별떼처럼 일어났다. 안사고는 晉·宋 이래의 古本을 인용하며 적절하게 깨우쳐 대답하되 근거가 자세하고 분명하여 그들의 의표를 찌르니 제유들이 탄복하지 않음이 없었다. 태종은 거듭 칭찬하고 …… 考定本을 천하에 반포하여 배우는 자들이 익히도록 하였다. 태종은 또 학문에 갈래가 많고 章句가 번잡하다고 여겨 안사고와 國子祭酒 孔穎達 등 제유들에게 명하여 《오경》 義疏 180권을 편찬하게 하여 《五經正義》라 이름하고 국학에 보내 시행토록 하였다.⁴⁰⁾

39) 《貞觀政要·卷六·慎所好》：“朕今所好者，惟在堯·舜之道，周·孔之教，以爲如鳥有翼，如魚依水，失之必死，不可暫無耳。”

40) 《貞觀政要·卷七·崇儒學》：“貞觀四年，太宗以經籍去聖久遠，文字訛謬，詔前中書侍郎顏師古於秘書省考定《五經》。及功畢，復詔尙書左僕射房玄齡，集諸儒重加詳議。時諸儒傳習師說，舛謬已久，皆共非之，異端蜂起，而師古輒引晉·宋以來古本，隨方曉答，援據詳明，皆出其意表，諸儒莫不歎服。太宗稱其善者久之，……頒其所定書於天下，令學者習焉。太宗又以文學多門，章句繁雜，詔師古與國子祭酒孔穎達等諸儒，撰定《五經》義疏凡一百八十卷，名曰《五經正義》，

태종은 집정초기인 정관 4년(630)에 우선 《오경》의 이본들을 대조하여 정본을 만들도록 하였다. 학술의 통일을 위해서는 텍스트의 통일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위의 기록에 따르면, 안사고에 의하여 考定本이 완성된 뒤 방현령을 비롯한 당시의 학자들이 모두 이를 비난하였다. 안사고가 적절하게 해명하였지만 남북조의 혼란기를 거치며 남북학의 분기가 심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안사고의 고정본이 천하에 반포된 것은 3년 뒤인 정관 7년(633)이었다.⁴¹⁾ 이후 태종은 공영달을 책임자로 하여 표준주해서인 《오경정의》의 집필을 추진한다.

현대학자 章權才는 《오경정의》의 집필로부터 시행까지의 과정을 4단계로 나누어 정리하였다.⁴²⁾ 1단계는 앞에서 살펴본 안사고의 고정본 완성과 남북조 경학자들의 표창을 통해 분위기를 조성한 시기이고, 2단계는 공영달을 책임자로 하는 경학팀을 구성하여 義疏를 편찬한 시기이다. 이 의소는 정관 16년(642)에 완성되었다. 3단계는 비판과 보완의 시기이다. 공영달은 이 책의 반포를 보지 못하고 사망하였는데, 그가 죽은 뒤 博士 馬嘉運이 의소의 오류를 지적하며 비판하였다. 이에 태종이 수정본을 만들도록 하였으나 마가운은 완성하지 못하였다. 高宗 永徽 2년(651)에도 황제는 이의 보완을 명하여 于志寧·張行成·高季輔 등이 수정보완하였다. 4단계는 반포단계이다. 수정을 거쳐 완성된 《오경정의》는 영휘 4년(653)에 비로소 천하에 반포되어 시행되었으며 이로부터 明經科는 이에 의거하여 치르도록 하였다. 《오경정의》의 편찬이 시작된 명확한 시기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안사고의 고정본이 반포된 시기에서 멀지 않을 것이므로 집필로부터 반포까지 대략 20여 년이 소요되었다.

이상에서 《오경》 고정본과 《오경정의》의 편찬과정을 비교적 자세하게 서술한 것은 이 작업을 통해서 《예기》가 《의례》와 《주례》를 압

付國學施行.”

41) 《舊唐書·太宗本紀·貞觀七年》：“十一月丁丑，頒新定《五經》。”

42) 章權才, 《魏晉南北朝隋唐經學史》(廣州: 廣東人民出版社, 1996), 250-251쪽 참조.

도하고 《오경》에 편입되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가 《오경》을 운위할 때 《예기》를 들게 된 것이 바로 이 작업으로부터 비롯하는 것이다. 현대의 ‘經’이었던 《의례》와 《주례》를 누르고 ‘記’에 불과했던 《예기》가 이제 《오경》이 된 것이다.

그러므로 60여 년이 지난 玄宗의 開元(713~741) 초가 되면 이미 《의례》와 《주례》가 사라질 것을 우려하는 소리가 나오게 되고,⁴³⁾ 국자감의 《오경》박사도 《예기》에만 박사를 두었을 뿐 《의례》와 《주례》에는 박사가 없게 되었다.⁴⁴⁾ 결국 개원 8년에 國子司業 李元瓘이 《의례》와 《주례》 및 《公羊》·《穀梁》을 명경과에 포함시킬 것을 건의⁴⁵⁾하여 황제의 허가를 받음으로써 이른바 《九經》이 갖추어지게 된다. 그러나 이미 《오경》에 포함된 《예기》의 지위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확고부동하한 것이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예기》의 《오경》 편입과정을 바탕으로 안사고와 공영달이 《삼례》 가운데 유독 《예기》를 채택한 이유 등을 살펴보면서 《예기》의 《오경》 편입이 가지는 의의를 구명해 보기로 한다.

43) 《舊唐書·良吏列傳下·楊瑒》：“又《周禮》·《儀禮》及《公羊》·《穀梁》殆將廢絕，若無甄異，恐後代使棄。望請能通《周·儀禮》·《公羊》·《穀梁》者，亦量加優獎。……瑒常嘆《儀禮》廢絕，雖士大夫不能行之。”

44) 《新唐書·百官志·國子監》：“《五經》博士各二人，正五品上。掌以其經之學教國子。《周易》·《尚書》·《毛詩》·《左氏春秋》·《禮記》爲五經。《論語》·《孝經》·《爾雅》不立學官，附中經而已。”

45) 《通典·卷十五·選舉三》：“開元八年七月，國子司業李元瓘上言：‘《三禮》·《三傳》及《毛詩》·《尚書》·《周易》等，並聖賢微旨。生人教業，必事資經遠，則斯道不墜。今明經所習，務在出身，鹹以《禮記》文少，人皆競讀。《周禮》經邦之軌則，《儀禮》莊敬之楷模，《公羊》·《穀梁》，歷代崇習，今兩監及州縣，以獨學無友，《四經》殆絕。事資訓誘，不可因循。其學生請各量配作業，並貢人參試之，日習《周禮》·《儀禮》·《公羊》·《穀梁》。並請帖十通五，許其入策。以此開勸，即望四海均習，《九經》該備。從之。”

2. 《五經》 편입의 이유와 그 의의

안사고가 《오경》 고정본을 만들고 공영달이 《오경정의》를 편찬하면서 《삼례》 가운데 유독 《예기》를 채택한 이유에 대해 명언한 기록은 발견할 수 없다. 정현이 4종 예서 가운데 《대대례기》를 소외시킨 분명한 이유를 알 수 없는 것처럼 안사고와 공영달이 《의례》와 《주례》를 소외시킨 이유를 알 수 없는 것이다. 다만 정현의 경우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대대례기》와 《소대례기》의 우열에 대한 인식들이 있어왔고, 그의 스승 마옹이 《소대례기》만 주해한 정황 등으로 미루어 그 이유를 추리할 수 있지만, 공영달의 경우는 《의례》와 《주례》가 여전히 중시되는 분위기에서 유독 《예기》에만 義疏를 단 것이다. 이는 결국 《삼례》의 우열이나 위상의 문제가 아니라 성격과 내용의 문제로 볼 수밖에 없다. 《삼례》의 성격과 내용에 비추어 1종을 선택한다면 《예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는 말이다. 이와 관련하여 皮錫瑞의 다음과 같은 언급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禮經을 공부하는 사람은 비록 禮의 節文을 중시하더라도 義理 또한 소홀히 할 수 없다. 성인이 정한 예는 그 의의를 드러내어 밝히는 ‘記’가 없다면 정밀한 뜻과 위대한 취지를 사람마다 모두 이해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절문은 때에 맞추어 변통하여야 하지만 의리는 고금을 통하여 바뀌지 않는 것이니 17편은 비록 성인이 정하신 바이지만 후세에 다 시행할 수는 없다. 그 의의를 얻어 변통하고 옛날을 헤아려 지금에 맞춘다면 禮의 뜻을 잃지 않게 될 것이다.⁴⁶⁾

여기서 ‘節文’은 禮의 형식과 절차를 말하고 ‘義理’는 그 형식과 절차에

46) 皮錫瑞, 앞의 책, 70쪽, <論禮記所說之義古今可以通行> : “治禮經者, 雖重禮之節文, 而義理亦不可少. 聖人所定之禮, 非有記者發明其義, 則精意闕旨, 未必人人能解. 且節文時有變通, 而義理古今不易, 十七篇雖聖人所定, 後世不盡可行, 得其義而通之, 酌古準今, 期不失乎禮意.”

포함되어 있는 본질적 의의를 말한다. '17편'은 《의례》를 말하는데 전술한 바와 같이 《의례》는 실용 예서이기 때문에 절문만을 다루고 있고 《주례》는 六部 중심의 관제만을 다룬 제도서이다. 이에 비해 《예기》는 禮의 본질적 의의를 다루고 있는 책이라는 것이다. 절문과 제도를 비록 성인이 제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周나라의 절문과 제도일 뿐 역사의 발전을 통해 환경이 바뀐 시대에는 적용할 수 없는 내용이 많다. 그러므로 예의 본질을 이야기한 《예기》야말로 시대를 초월하여 고금에 통용될 수 있는 책이라는 것이다.

안사고와 공영달이 《예기》에 주목한 이유도 아마 이 때문이었을 것이다. 《예기》는 피석서의 말처럼 의리만을 다루고 있지는 않다. 의리는 물론이고 정치와 학문 등을 포함하여 고대문화 전반을 망라하는 綜合性的 서적이다. 그러므로 唐代의 문화수준에 비추어 1종의 예서를 선택한다면 시대와 내용의 제약이 있는 《의례》나 《주례》보다는 《예기》가 적합하였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공영달의 말을 직접 들어보자.

이에 이치에 널리 통한 사람들이 지금을 알고 옛 것을 익혀, 전대의 憲章을 상고하고 당시의 득실을 참고하여, 직접 본 것과 함께 옛날에 들은 것을 각각 기록하였다. (이 기록들을) 모두 모아 분류하여 붙이니 이에 《예기》라는 이름이 있게 되었다.⁴⁷⁾

생각건대 《논어》에 이르기를 “은나라는 하나라의 예에 근거하였고”, “주나라는 은나라의 예에 근거하였다.”고 하였는데, 《예기》는 虞·夏·商·周의 예를 모두 진술하였다.⁴⁸⁾

앞의 인용문은 전술한 《예기》의 종합성을 피력한 글이고, 뒤의 인용

47) <禮記正義序> : “于是博物通人, 知今溫古, 考前代之憲章, 參當時之得失, 俱以所見, 各記舊聞. 錯總鳩聚, 以類相附, 《禮記》之目, 于是乎在.”

48) <禮記正義解題> : “案《論語》云‘殷因于夏禮’, ‘周因于殷禮’, 則《禮記》總陳虞·夏·商·周.”

문은 《예기》가 《의례》나 《주례》처럼 주나라의 禮制만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예들을 통시대적으로 망라한 책이라는 점을 지적한 글이다. 대체로 피석서의 주장을 공영달에게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영달은 《의례》와 《주례》가 주나라의 禮制라고 하여 이들을 무시하지는 않은 듯하다. 다시 피석서의 견해를 살펴보자.

공영달이 《삼례》 가운데 유독 《예기》에만 疏를 단 것은 (《예기》의 내용이) 실은 《삼례》와 여타의 경전들을 관통하고 있기 때문이다. ‘記’의 한두 마디 말에 의거하여 수천 자에 달하는 소를 달기도 하였으니 예컨대 <王制>편의 ‘制三公一命卷’ 운운하는 단락에는 4,000여 자의 소를 달았고, ‘比年一小聘’ 운운하는 단락에는 2,000여 자의 소를 달았으며 <月令>과 <郊特牲>의 篇題를 해설하는 소는 각각 3,000여 자나 되며 그밖에 1,000여 자가 되는 소는 더욱 많다. 근본을 탐색하고 광박한 견문을 다 드러내었지만 繁博함을 좋아하여 그리한 것이 아니다. 이 한 경전에서 이 일을 자세히 설명하여 그 뒤 이 일을 다시 볼 때에는 거듭 말하지 않게 하였으니 정현의 주가 번잡한 듯 하지만 번잡하지 않은 것과 같다. 학자들이 《禮記注疏》를 깊이 음미한다면 《예기》에만 능통할 뿐만 아니라 다른 경전도 함께 통하게 될 것이다.⁴⁹⁾

피석서의 견해를 보완하여 해석하면, 공영달은 《의례》나 《주례》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예기》로써 《삼례》를 포괄하려 하였고 나아가서는 기타 경전의 이해에 도움을 주려 하였다는 것이다. 《의례》나 《주례》는 내용의 성격과 시대의 제약으로 인해 《삼례》를 포괄할 수 없었다는

49) 皮錫瑞, 앞의 책, 74쪽, <論鄭注引漢事引識緯皆不得不然習禮記者當熟玩注疏其餘可緩> : “孔穎達於《三禮》, 惟疏《禮記》, 實貫串《三禮》及諸經. 有因記一二語, 而作疏至數千言者. 如<王制>‘制三公一命卷’云云, 疏四千餘字; ‘比年一小聘’云云, 疏二千餘字; <月令>·<郊特牲>篇題疏, 皆三千餘字. 其餘一千餘字尤多. 元元本本, 殫見洽聞, 又非好爲繁博也. 既於此一經下詳說此事, 以後此事再見, 則不復說. 亦猶鄭注似繁而不繁也. 學者熟玩《禮記注疏》, 非止能通《禮記》, 且可兼通群經.”

말이다. 과연 공영달은 이런 의도로 《예기》에만 義疏를 단 것일까? 다시 공영달의 말을 들어보자.

《예기》가 지어진 것은 공자로부터 비롯한다. …… 공자가 돌아가시고 난 뒤 72子の 무리들이 들은 바를 함께 편찬하여 이 《記》가 되었다. 舊禮의 취지를 기록하기도 하고, 變禮의 유래를 기록하기도 하고, 體와 履를 함께 기록하기도 하였으며, 득실을 섞어 서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이 들을) 편집하여 기록하였기 때문에 《記》가 된 것이다.⁵⁰⁾

얼핏 《예기》의 종합성을 강조하는 듯이 보이는 이 글에서 필자가 주목하고자 하는 대목은 “體와 履를 함께 기록”하였다는 대목이다. ‘體履’와 관련하여 이 글의 앞부분에서 공영달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정현이 지은 서문에서, “예는 體이며 履이다. 마음으로 통괄하는 것을 體라고 하고 실천하여 시행하는 것을 履라고 한다.” 하였는데 정현이 그러한을 안 것은 <禮器>에 “예는 體이다.” 하였고, <祭義>에 “예는 이것을 실천(履)하는 것이다.” 하였기 때문이다. 《예기》에 이미 이러한 해석이 있었기 때문에 정현이 의거하여 사용한 것이다. 예가 비록 체와 리로 습訓되지만, 《周官》이 體이고 《의례》가 履이다.⁵¹⁾

體履는 대체로 體用과 비슷한 개념으로 보인다. 공영달은 예서를 두고 이야기할 경우 《주관》은 體가 되고 《의례》는 履가 된다고 한 뒤, 《예기》에는 이 體와 履가 함께 기록되어 있다고 한 것이다. 물론 《예기》에는 예의 본질과 형식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의 서술일 수도 있지만,

50) <禮記正義解題> : “其《禮記》之作, 出自孔氏. …… 至孔子沒後, 七十二之徒共撰所聞, 以爲此《記》. 或錄舊禮之義, 或錄變禮所由, 或兼記體·履, 或雜序得失, 故編而錄之, 以爲《記》也.”

51) 같은 글 : “鄭作序云: ‘禮者, 體也, 履也. 統之于心曰體, 踐而行之曰履.’ 鄭知然者, <禮器>云: ‘禮者, 體也.’ <祭義>云: ‘禮者, 履此者也.’ 《禮記》既有此釋, 故鄭依而用之. 禮雖合訓體·履, 則《周官》爲體, 《儀禮》爲履.”

《주례》와 《의례》의 성격과 내용을 검토했다는 뜻도 내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 점이 바로 피석서의 견해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 공영달은 《예기》의 통시대적이고 體履兼備의 종합적인 성격에 주목하고, 《의례》·《주례》의 시대적 제약 및 내용의 한계를 고려하여 《예기》로서 《삼례》를 포괄하고자 《예기정의》를 편찬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공영달의 이 작업은 결과적으로 예가 규범과 절차(《의례》), 혹은 職官과 제도(《주례》)에 제한된 것이 아니라 고대문화 전반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대 정착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이 점이 바로 《예기》가 《오경》에 편입된 의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IV. 결 론

秦의 분서갱유와 挾書律로 인해 사라졌던 경전들은 漢代에 와서 복원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한초에 예학과 관련된 서책은 오늘날 《의례》로 불리는 《土禮》 17편이 유일하였기 때문에 서한의 오경박사 가운데 예학의 박사는 바로 이 《의례》박사였다. 《의례》학의 대가인 后蒼의 문하에서 戴德과 戴聖·慶普가 배출되어 예학에는 이들 삼가의 학이 있게 되었고, 특히 대덕과 대성은 후창의 《의례》학을 계승한 이외에도 기존의 예설들을 모은 85편의 《대대례기》와 49편의 《소대례기》를 각각 편찬하였다. 그러므로 서한 시기에는 정확한 내원을 알 수 없는 《주례》를 포함하여 4종의 예서가 있었는데, 《의례》를 禮經이라고 하였고, 동한에서는 《의례》와 함께 《주례》도 예경이라고 하였다. 현대에는 예학의 경전으로는 《의례》와 《주례》만이 인정되었던 것이다.

동한 말에 정현은 예서들에 주석을 가하면서 《의례》와 《주례》 및 《소대례기》에 주를 달고 《대대례기》는 주를 달지 않았는데, 이후 정현

의 예학이 유행하면서 《삼례》라는 명칭이 생기게 되었다. 이때부터 《소대례기》는 《예기》라는 명칭을 독점하고, 예경이었던 《의례》·《주례》와 동일한 위상을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대대례기》는 읽지 않는 책이 되어버려 唐代에 벌써 85편 가운데 39편만이 남게 되었다.

당태종은 한대로부터 남북조를 거치는 동안 다양해진 학설들을 통일하고자 안사고에게 명하여 《오경》의 표준본을 만들게 하고, 공영달을 중심으로 이 표준본의 義疏를 집필하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완성된 책이 바로 《오경정의》인데, 이 가운데 예학의 경전은 《의례》나 《주례》가 아닌 《예기》가 채택되었다. 이때부터 오늘날까지 《예기》는 《오경》의 하나로 언급되면서 《의례》나 《주례》보다 우월한 지위를 점하게 되었다.

안사고나 공영달이 《의례》나 《주례》가 아닌 《예기》를 《오경》에 포함시킨 이유를 명언한 기록은 없지만 필자가 자료를 검토하여 고찰한 결과, 공영달은 《예기》의 통시대적이고 體履兼備의 종합적인 성격에 주목하고, 《의례》·《주례》가 주나라 한 시대의 규범과 職制만을 다룬 서적인 한계를 고려하여, 《예기》로써 《삼례》를 포괄하고자 《예기정의》를 편찬한 것으로 생각된다.

공영달의 이 작업은 결과적으로 예가 규범과 절차나 職官과 제도에 제한된 것이 아니라 고대문화 전반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대 정착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이 점이 바로 《예기》가 《오경》에 편입된 의의라고 할 수 있다.

< 參考文獻 >

《史記》
《漢書》
《後漢書》
《晉書》

- 《周書》
《魏書》
《隋書》
《舊唐書》
《新唐書》
《儀禮注疏》(《十三經注疏》本,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活판), 1999.
《周禮注疏》(《十三經注疏》本,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活판), 1999.
《禮記注疏》(《十三經注疏》本,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活판), 1999.
《經典釋文》(《四庫全書》本)
《貞觀政要》(《四庫全書》本)
《通典》(《四庫全書》本)
《朱子語類》(北京: 中華書局 活판), 2004.
《朱子全書》(上海: 古籍出版社 活판), 2002.
王聘珍, 《大戴禮記解詁》(北京: 中華書局 活판), 1983.
皮錫瑞, 《經學通論》(北京: 中華書局 活판), 1998.
朱維鈺 編, 《周子同經學史論著選集》(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996.
徐復觀, 《中國經學史的基礎》(臺北: 臺灣學生書局), 1982.
章權才, 《兩漢經學史》(廣州: 廣東人民出版社), 1990.
章權才, 《魏晉南北朝隋唐經學史》(廣州: 廣東人民出版社), 1996.
黃開國, 《經學辭典》(成都: 四川人民出版社), 1993.
錢玄, 《三禮通論》(南京: 南京師範大學出版社), 1996.
錢玄·錢興奇, 《三禮辭典》(南京: 江蘇古籍出版社), 1996.
張濤, 《經學與漢代社會》(石家莊: 河北人民出版社), 2001.
華友根, 《西漢禮學新論》(上海: 上海社會科學院出版社), 1998.
王葆玟, 《今古文經學新論》(北京: 中國社會科學院出版社), 1997.
趙吉惠 등, 《中國儒學史》(鄭州: 中州古籍出版社), 1991.
王啓發, 《禮學思想體系探源》(鄭州: 中州古籍出版社), 2005.

〈中文提要〉

現存禮學的儒家經典共有《儀禮》·《周禮》·《小戴禮記》·《大戴禮記》四種。但其中唯有《禮記》被納入《五經》，從而贏得獨一無二的地位。可是就漢代言之，《儀禮》和《周禮》却是經；《禮記》不過是解經的‘記’。東漢末鄭玄所註《儀禮》·《周禮》·《小戴禮記》三種，由是獲《三禮》之名。從此《大戴禮記》失勢，到唐代八十五篇中僅存三十九篇。

唐太宗為統一經學詔顏師古考定《五經》正文，并詔孔穎達與諸儒撰定《五經》義疏。此義疏正是《五經正義》，而《三禮》之中僅有《禮記》被納入禮經。從此《禮記》成為《五經》之一，《儀禮》和《周禮》的地位不如《禮記》。

顏師古和孔穎達採納《禮記》的原因不明確。依筆者考究，孔穎達關注《禮記》的涵蓋整個朝代的節文義理及體履兼備的綜合性，認為比記錄周朝規範和職制的《儀禮》·《周禮》更有用於世，從而意圖以《禮記》包羅《三禮》來撰定《禮記正義》。

故此，孔穎達撰定《禮記正義》的結果，形成‘禮’不是規範節次和職官制度，是囊括一切古代文化的觀念，《禮記》被納入《五經》的意義就在於此。

주제어 : 《禮記》, 《五經》, 《儀禮》, 《周禮》, 《大戴禮記》, 《五經正義》, 鄭玄, 孔穎達